

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개편, 관세·비관세 종합 상담 -
- 산업부, 국표원 및 11개 기관, 무역장벽 대응 협업 거버넌스 구축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월 4일(수)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①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②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③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무역장벽 119 신규서비스 : ① 관세 환급 대응 상담 ②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③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④ 비관세 장벽(기술규제, 해외인증, CBAM 등) 대응 상담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하여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및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정연신 (044-203-4032)
	기술규제대응국	책임자	과 장	박용민 (043-870-5520)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배소현 (043-870-5528)

무역장벽 119 Report 2026-02

01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동향
02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03 기업 상담 대응 사례
04 전문가 칼럼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 유럽 8개국 대상 관세 부과 철회"^(1,2)

한국무역협회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입물류 전문 컨설팅 상담회

미국 상호관세의 함금은 권리가 아니라 절차에 기댄다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대비하며

KOTRA 무역장벽 119 전담반
02-3460-7348



2026-02 무역장벽 119 Report KOTRA 무역장벽 119 전담반

01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동향

미국

아마존 CEO, "트럼프 관세, 상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
"옐디 체시 아마존 CEO, "아마존 및 다수의 판매업체들이 관세조치에 대해 제고를 하며 기대하고 고객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려 했으나,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 옐디는 "일부 품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자들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CNBC)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 유럽 8개국 대상 관세 부과 철회"^(1,2)

트럼프 대통령, "아프리카 워터 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및 사실상 북극 지역 관세에 대한 그린란드 협상을 마친다"고 말하며 "아프리카 워터에 따라 고정부 발표 예정이었던 워터에 대해 대상 관세 부과를 사법에서 없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미국과 체결한 양국 그린란드의 행정관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는 2월 1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시사

표지

(1) 글로벌 보호 무역 조치 동향

2026-02 무역장벽 119 Report KOTRA 무역장벽 119 전담반

02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행사일 2월 5일 14:00
미국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신청 세미나
미국 상호관세 하향조정 소송결과에 따른 관세 환급 실무 대응사항 정보 사전 견본 긴급 설명회

신청 시작일 2026. 1. 26
신청 마감일 신청초 마감
문의처 032-260-1103
③ 신청 바로가기

한국무역협회 행사일 2월 5일 13:30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입물류 전문 컨설팅 상담회
수출입기초, 물류비절감, 기업물류 효율화, 관세혜택 및 FTA 활용 등을 위한 관세사들에게 상담

신청 시작일 2026. 1. 26
신청 마감일 2026. 2. 11
문의처 02-6000-6254
③ 신청 바로가기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일 2월 11일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변화하는 EU의 주요제도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책 제고를 위한 통상환경 세미나

신청 시작일 2026. 1. 26
신청 마감일 2026. 2. 9
문의처 02-6000-3544
③ 신청 바로가기

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
2026 한일중소기업 진흥경쟁분야 기술교류상담회
한일 중소기업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일일한지기업 네트워킹 통한 시장 진출 지원 확대
인도네시아수출, 현지마케팅 특색 참가자

신청 시작일 2026. 1. 27
신청 마감일 2026. 2. 25
문의처 411-3-3273-3905 (홍안동 도로국)③
③ 신청 바로가기

2026-02 무역장벽 119 Report KOTRA 무역장벽 119 전담반

03 기업 상담 대응 사례

가격이 높은 원료가 중국산일 경우 원산지 판정

문의 중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중국산 원료를 수입 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원료 수입 가격이 판매가격의 70%를 초과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관세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비특혜관세지 기준의 경우 제품이 원도, 특외, 명칭 등 실질적 변화를 일으킨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원료 가격이 높다고 해도 실질적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격 비율을 떠나, 모든 장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CBP E-Ruling System을 신청할 것을 권고. 역관세제 도입부터에서 진행 중인 미국 관세청에 대응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산업을 상부 통상고교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통상TV 산업부 감사부관이 알려주는 관세대응 꿀팁!

Made in Korea인데 중국산?

YouTube 통상TV에서 꿀 관세대응 꿀팁을 확인하세요

EPISODE 1 EPISODE 2 EPISODE 3

(2)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3) 주요 상담 사례

2026-02 무역장벽 119 Report KOTRA 무역장벽 119 전담반

03 기업 상담 대응 사례

한국산, 중국산 제품의 세율 문의

문의 현재 한국산과 중국산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 중으로 원산지별로 부과되는 미국 관세 문의. 또한, 미국 관세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

답변 원산지 국가를 부과되는 관세가 상이하며, 관세를 확인 방법 및 적용 시 유의 사항 안내함.

③ 미국 관세 확인하기

과세가격 검토 문의

문의 DAP와 FOB 조건의 수출가격 산출방식 문의

답변 인코덱스 조건의 기본 개념을 안내하였고, FOB 가격은 DAP에서 수입국 내륙운송비와 해상/항공운임, 적하/포장비를 공제하여 산정됨을 안내. 기존 미 수출시 DAP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였으나, 정확한 FOB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관세를 줄일 수 있음.

화장품 및 무상 제품 수출 시 유의 사항

문의 향수의 스킨케어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미국으로 수출 시 유의사항과 세율 수출시 인보이스 금액 산출 문의

답변 화장품의 경우 포장지에 '화장품'이 함유되어 있으면 품목코드 80%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체 명세서 등 통관자료 구비와 필요하고 선제서류에 함유량 명시, 또한 무상이라도 과세가격은 일률로 결정하거나 낮게 신고할 수 없으며, 통관 물품에 적정한 가격이 중화하여 신고하여야 함.

COMPONENT 1
FOD (Food & Beverage) 분야
물류에 따른 적재장/배차차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출/수입 물품의 종류, 양, 포장, 관세, FTA 등 2차 관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

COMPONENT 2
DAP (Delivered Duty Paid) 분야
물류에 따른 적재/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FOD 분야 내 수출/수입

2026-02 무역장벽 119 Report KOTRA 무역장벽 119 전담반

04 전문가 칼럼

'미국 상호관세의 함금은 권리가 아니라 절차에 기댄다'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대비하며

박주영 대표 관세사 | 관세법인 씨앤유 (Pnair@csun.co.kr)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적인 관세 절하는 기준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 더 이상 국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관세는 국가 안전, 공급망 재편, 정치적 협상력을 겨냥한 구조적 정책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보호무역이 기준이 더 이상 일회성 관세로 남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EU 등 주요 교역국을 역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무역 흐름에 가세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Section 232 품목별 관세율 상향세율 등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겪어 왔다. 다만, 2025년 1월 미국과 한국 간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미국 관세 정책 자체는 일정 부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미 남북한 관세에 대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2026년 1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상거래관리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율, 즉 상호관세에 이관된 행정관세 관세는 미국 입법입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발표 과정에서 일부 재관세율에 대한 행정관세에 대해 일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법 판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다만, 위법 판결이 곧바로 관세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세율(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관세율로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자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관세 행정 체계상, 환급은 반드시 수입자와 신청 절차 이행만으로는 정을 분량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관세 절감 기대가 커지는 한편, 관세로 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이미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법 판정으로 환급 절차가 가능해질 경우, 기업은 PSSC(Post-Summary



(3) - 1 주요 상담 사례

(4) 전문가 칼럼